

제주지역 공공언어 사용 실태 연구

김미진*, 배영환**

차 례

1. 서론
2. 공공언어의 개념과 개선의 필요성
 - 1) 공공언어의 개념
 - 2)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
3. 제주지역 공공언어 사용 실태
 - 1) 띄어쓰기
 - 2) 문장부호
 - 3) 외래어 남용과 난해한 한자어
 - 4) 어색한 문장과 부정확한 표현
 - 5) 2010년과 2015년의 비교
4. 결론

■ 국문 요약

이 논문은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과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언어의 핵심은 생산자가 누구든지 그 대상은 바로 일반인이고, 불특정 다수라는 사실이다. 그러므

* 제1저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로 공공언어는 그 사용자인 일반인 누구나 알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바로고 쉬운 공공언어 쓰기가 장려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는 공공언어지원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어진흥조례를 앞을 다투어 제정하였다. 이렇게 공공언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실제 공공언어의 현실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공공언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2010년과 5년이 지난 2015년의 공문서 오류 현황을 비교하여 그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에 누리집에 게시되었던 문서와 2015년에 게시된 문서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 남용과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문장과 잘못된 표현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문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공문서나 2015년의 공문서의 오류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많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언어 사용 현장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 행정직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기관 책임자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공공언어 개선이 논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려면 행정 실무자들이 왜 공공언어를 쉽고 빠르게 쓰는 것이 필요한지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요청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주제어 : 공공언어, 공공언어 개선, 쉬운 언어 정책, 제주도, 문법적 오류

1. 서론

우리나라는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공공언어를 쉽게 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언어를 쉽게 쓴다는 것은 우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쉬운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물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로 현재까지 행정 부처별로 전문 용어를 표준화 절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외국어와 한자를 쉬운 친서민 용어로

바꾸는 등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데, 특히 영미권 국가의 ‘쉬운 언어 정책(Plain Language Policy)’과 유사한 것이다. 가령,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연방 정부 주도 아래 ‘쉬운 언어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과 정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방대한 정부 문서를 줄이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두어 왔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 Act)’이 전면 시행된 이후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공공 부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명실상부하게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통합을 유도하는 기제로 부상하였다.¹⁾ 또한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도 어려운 공공 언어로 인해 난방비 신청을 하지 못한 노부부가 동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공공 분야에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영국 중앙 정부는 물론 공공 기관, 은행, 보험회사, 사회단체 등의 문서와 양식을 쉽고 간결하게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여 연간 5,000만 파운드(약 1천억 원 상당)를 절약한다고 알려졌다.²⁾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쓰기가 장려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는 공공언어지원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지방자

1) 김명희, 「한국의 공공언어정책 연구-법령과 체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1-2쪽.

2) 예를 들면 어려운 영어로 High-quality learning environments are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facilitation and enhancement of the ongoing learning process. (양질의 교육 환경은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촉진과 향상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와 같은 문장을 Children need good schools if they are to learn properly. (어린이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치단체마다 국어진흥조례를 앞을 다투어 제정하였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도 2014년 11월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었다. 그 내용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사용에 관한 내용³⁾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먼저 공공언어의 개념은 무엇인지, 최근 들어 왜 공공언어 개선이 대두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2010년과 2015년의 제주지역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언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그 후에 실제 공공언어의 개선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공공언어의 개념과 개선 필요성

1) 공공언어의 개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공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공공 요금, 공공 기관, 공공 시설, 공공 임대, 공공 주택’ 등이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공공 디자인’, ‘공공 의료’, ‘공공 데이터’, ‘공공 급식’ 등 점점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공공 언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그런데 ‘공공언어(public language)’라는 개념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공 언어라는 용어는 국

3)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립국어원에서 새롭게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졌는데, 국립국어원은 2009년 5월 직제 개편과 함께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하면서 ‘공공언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⁴⁾ 그런데 ‘공공언어’라는 단어는 아직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공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이란 어떤 의미일까? ‘공공’(公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공공 언어’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언어’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공공언어라는 개념이 그리 쉽게 다가오는 개념은 아니다. 지금까지 ‘공공 언어’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⁵⁾

필자	정의
김정수(2009)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상대한 언어.
김세중(2010)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
이인제(2009)	정부나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
남영신(2009)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도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
조태린(2010)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민현식(2010)	공공의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 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

[표 1]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

-
- 4) 황용주,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26쪽에 의하면 ‘공공 언어’라는 말은 2006년에 간행된 잡지에 처음 등장한다고 한다.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가 명확하고 다듬어진 언어가 되도록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새로 다듬은 말을 제안할 것이다. 또 공공 언어가 바른 언어가 되도록 연구, 조사함은 물론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국립국어원 무엇을 하는 곳?’, 주간한국 2143호, 2006.10.17.발행)
- 5) 황용주,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2011, 28쪽.

공공언어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공공언어의 생산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공공언어의 생산자를 정부 기관과 같이 공적 영역으로 한정하려는 입장과 민간에까지, 즉 사적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 정부 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

넓은 의미: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

위에서 공공언어의 정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보았는데, 공공언어의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뉘지만 좁은 의미이든 넓은 의미이든 공공언어의 대상(이용자)은 바로 일반인이고 이는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언어의 핵심은 언어 생산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언어의 대상(이용자)을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공공언어의 중요성이 이해될 것이다. 다만, 위의 표에서는 대상 언어를 문어만 문체 삼았음에 비해 구어까지도 공공 언어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⁶⁾도 있다. 사실 공공언어에서 구어를 문체 삼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문어에 대해 규범성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표준발음이 있기 때문에 구어에 대한 문체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언어에는 어떠한 형식이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언어의 유형과 출현 양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⁷⁾

6) 민현식 외,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2010.

7) 조태린, 「공공언어 문체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회, 2010, 383-384쪽.

영역	유형	출현 형식
↑ 공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법률, 공문서, 판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계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교과서, 수업, 강의, 시험 문제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지식의 대중적 전달에 사용하는 언어	기사/보도, 논설 칼럼, 지식/교양 등
	계약, 투자, 판매, 구매, 광고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상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물
↓ 사적	학계, 산업계 등 전문 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	강연, 발표, 토론, 회의, 논문, 전문 서적
	방송, 공연 등을 통한 대중적 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드라마, 코미디, 예능/오락, 영화, 연극, 음악 등
	인터넷, 휴대전화 등 가상 공간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개인 누리집, 블로그, 댓글, 트위터 등

[표 2] 공공 언어의 양상

위의 표에서와 같이 공공 언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적 영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의 교과서나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공공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대체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 중 특히 일반인들이 대규모로 관련이 있는 것은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일 것이다. 계약서나 약관, 사용 설명서 등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표현 활동 영역에 해당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등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언어에 포함될 수 있다.

2)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

최근 공공 언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가 어렵고 생소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불만과 이에 따른 해결책 역시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공 언어는 여전히 어렵고 개선될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경우 국립국어원이 주관이 되어 보도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어려운 용어나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적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보도 자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쉬운 글쓰기에 대한 인식은 중앙 부처의 경우, 어느 정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평가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 언어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면 공공언어가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여기에는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언어의 핵심은 생산자가 누구이든지 그 대상(이용자)은 바로 일반인이고, 불특정 다수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공언어는 그 사용자인 일반인이 누구나 알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 즉 불특정 다수 중에는 문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어느 어느 정도 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의 경우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정보에 취약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 능력은 고학력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문서 이해 수준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한다⁸⁾. 결국 국민의 문해 능력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생산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공공언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외국어 정책 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114억에 달한다고 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한 해 34억 정도 비용 절감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의사소통에 기반한 이른바 ‘소통’ 차원에서 공공언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과 ‘불통’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해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이 느끼는 불만 중의 하나는 바로 ‘불통’에 있다. 그런데 ‘불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쉬운 공공언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위직 공직자에서 일반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만 아는 언어, 담당자만 아는 언어는 소통에 지장이 있다. 소통은 양방향적이다. 일방적인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차원이다. 어려운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 또는 바른 국어 사용은 국어의 규범에 해당된다. ‘규범’이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국가 기관에서부터 지키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기관은 당연히 쉬운 국어를 써야 하며, 바른 국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효율성 차원의 지적도 할 수 있다. 어려운 한자나 어려운 외래어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언어 생산자인 담당 공무원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사용할 것이며, 그에 따라 그 주변의 공무원 역시 모른 채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업무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언어 개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 생산자(대표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쉬운 글쓰기에 대한

8) 이희수·박현정·이세정,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와 OECD 국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3-2, 한국비교교육학회, 2003, 193-219쪽.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언어 생산자들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¹⁰⁾, 또는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기 일에 대한 프로 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선 필요한 것이 담당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주지역 공공언어 사용의 실태

앞에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언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2010년의 공문서는 공공언어 개선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작성되었을 것이다. 2010년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제주도내 행정기관의 누리집 언어를 분석한 자료¹¹⁾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5년이 지난 2015년의 공문서와 비교하여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1월 12일 조례 1231호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진흥 조례가 제정되고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일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그러

9)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는 행정 서식에서 기존의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고 한다.

10)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바른 글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1)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0 제주도내 행정기관의 누리집 언어』, 2010.

한 인식의 변화가 2015년 공문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과연 공공언어가 개선되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 사항이나 공고 등의 공문서이다. 5개 기관 각 6개씩, 2010년 30개와 2015년 30개로 총 60개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공문서들의 오류는 ① 띄어쓰기, ② 문장부호, ③ 외래어 남용과 난해한 한자어, ④ 어색한 문장과 부정확한 표현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기준으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하였다.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② 문장부호

한글맞춤법의 문장부호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다.

③ 외래어 남용과 난해한 한자어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자나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부득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되 가급적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하는 순화어 사용을 권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난해한 한자어나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풀어 써야 한다.

④ 어색한 문장과 부정확한 표현

문장의 호응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접속이 잘못된 문장, 지나치게 길거나 생략된 문장,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군더더기 표현과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1)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은 각 단어마다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단위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 띄어쓰기의 오류는 전체 오류 중 가장 많이 나타난다. 2010년에는 전체 1,133개 오류 중 643개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전체 1,758개 중 1,188개로 68%를 차지한다. 띄어쓰기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띄어쓰기 규정이 어렵고 혼동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문서 작성자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띄어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게시물1	15	29	29	13	35
게시물2	41	16	14	9	8
게시물3	27	54	40	13	7
게시물4	31	12	16	27	14
게시물5	40	46	17	11	3
게시물6	12	15	17	13	19
소계	166	172	133	86	86

[표 3] 2010년 띄어쓰기 오류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게시물1	22	37	20	33	55
게시물2	61	16	29	21	41
게시물3	57	141	13	17	8
게시물4	67	19	19	77	34
게시물5	62	64	21	21	11
게시물6	35	53	48	43	9
소계	304	330	150	212	158

[표 4] 2015년 띄어쓰기 오류

특히 (1)의 예 ‘심사일시, 별도결정, 추후결정, 심사대상’처럼 명사와 명사를 붙여 쓰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붙여 쓰는 것이다. 전문용어나 고유명사도 아니고, 하나의 단어도 아니므로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이러한 오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붙여 써도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의미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1) 가. 심사일시 → 심사 일시
 나. 별도결정 → 별도 결정
 다. 추후결정 → 추후 결정
 라. 심사대상 → 심사 대상

또한 띄어 써야 할 자리에서 붙여 쓰고 붙여 써야 할 자리에 띄어 쓰는 경우도 나타난다. (2)의 ‘중’, ‘시’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하는 것이나 앞말에 붙여서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화폐 단위를 나타내거나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도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이다. ‘천원, 백여명’ 등이 대표적인 예로 ‘천 원, 백여 명’처럼 써야 한다.

- (2) 가. 10월중 → 10월 중
 나. 회의시 → 회의 시
 (3) 가. 첫걸음입니다. → 첫걸음입니다.
 나. 취소 할 수 있음. → 취소할 수 있음.

(3)에서는 서술격조사 ‘이다’나 접사로 쓰인 ‘하다, 되다’의 띄어쓰기 오류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홀로 독립하여 쓸 수 없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또한 ‘-하다’가 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는 붙

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예이다.

2) 문장부호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빠른 글쓰기가 이뤄지면서 문장부호 사용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생략하거나 덧붙인다. 또한 문서의 정렬과 시각적 효과를 위해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케시물1	13	11	12	0	15
케시물2	19	8	6	2	7
케시물3	5	9	13	6	16
케시물4	16	15	12	6	6
케시물5	16	2	10	14	12
케시물6	11	11	11	34	3
소계	80	56	64	62	59

[표 5] 2010년 문장부호 오류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케시물1	17	13	13	7	10
케시물2	4	12	15	4	14
케시물3	13	15	9	2	1
케시물4	14	13	14	9	11
케시물5	11	15	13	13	7
케시물6	7	15	20	10	7
소계	66	83	84	45	50

[표 6] 2015년 문장부호 오류

가장 두드러진 오류는 쌍점(:)을 앞 문장과 띄어 쓰는 것이었다.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료에서 (4)의 예처럼 띄어 썼다.

- (4) 가. 장소 : → 장소:
 나. 주최 : → 주최:
- (5) 가. 2010. 8. 2(월) ~ 8. 31(화) 18:00 → 2010. 8. 2.(월) ~ 2010. 8. 31.(화) 18:00
 나. 2015. 4. 15(수) ~ 4. 28(화) → 2015. 4. 15.(수) ~ 4. 28.(화)

(5)처럼 낱짜를 표기할 때 온점(.)은 년, 월, 일을 생략하여 쓴 것이므로 숫자 뒤에 반드시 붙여야 함에도 년, 월에는 잘 붙이고 일에는 생략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이나 2015년 공고물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공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이다.

3) 외래어 남용과 난해한 한자어

공공 언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려운 공공 언어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언어라고 무조건 쉬운 언어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외래어를 남용하거나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해당된다.

먼저 한자어의 경우, 그동안 지적되어 온 예 중에 ‘위요하다’, ‘지장물’, ‘취락’ 등이 있다.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이를 ‘들러싸다’, ‘장애물/걸림돌’, ‘마을’ 등으로 쓴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최근에는 한자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컨센서스’, ‘케이터링’, ‘뮤지엄 콤플렉스’, ‘그린 인프라’ 등과 같은 단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의견 일치’, ‘출장 요리’, ‘박물관 복합 단지’, ‘녹색 기반 시설’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게시물1	2	1	4	4	4
게시물2	6	0	1	0	1
게시물3	2	1	1	1	0
게시물4	5	1	2	3	1
게시물5	1	1	1	0	0
게시물6	1	3	3	0	2
소계	17	7	12	8	8

[표 7] 2010년 외래어와 한자어 남용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게시물1	2	9	1	1	7
게시물2	5	0	0	1	10
게시물3	11	6	0	1	1
게시물4	5	1	5	2	5
게시물5	8	1	2	20	3
게시물6	4	1	1	3	1
소계	35	18	9	28	27

[표 8] 2015년 외래어와 한자어 남용

(6가)의 ‘계침’은 게시나 침부를 뜻하는 말인 듯하다. 상황에 맞게 풀어 쓰는 것이 좋다. (6나)는 ‘適宜’의 뜻으로 해석하여 ‘알맞게, 적당하게’로 순화하였고 (6다)의 ‘필하다’는 ‘마치다’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6) 가. 모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민열린마당 게시판 등 공
고, **현수막 게시**

→ 모집 방법: 누리집 게시, 시민 열린 마당 게시판 공고, **현수
막 게시**

나. 의원 및 집행부 간부 역할에 따라 **적의** 조정

→ 의원 및 집행부 간부를 역할에 따라 **알맞게** 조정

다. 제 1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어색한 문장과 부정확한 표현

정확한 문장과 바른 표현으로 작성되지 않은 공문서는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으려는 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규범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내용과 모호한 표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지 않는 표기나 비문법적인 공공언어 사용도 문제가 된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거나,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피동과 사동의 잘못된 사용, 중복된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게시물1	5	4	5	14	1
게시물2	8	2	5	6	0
게시물3	5	3	3	2	3
게시물4	1	1	3	12	1
게시물5	2	6	1	5	0
게시물6	2	4	4	2	7
소계	23	20	21	41	12

[표 9] 2010년 문장과 표현 오류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교육청	도의회
게시물1	8	3	2	3	5
게시물2	5	2	3	4	3
게시물3	4	3	2	3	1
게시물4	5	2	2	4	1
게시물5	3	2	1	3	2
게시물6	2	1	1	8	0
소계	27	13	11	25	12

[표 10] 2015년 문장과 표현 오류

(7) 가.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전화연락 후 한국사 인증서 방문 제출 및 FAX로 송부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7가)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로 (7나)는 ‘전화 연락 후 한국사 인증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으로 보낼 것’으로 고쳐 보았다. (7가)는 ‘있으시기를’과 ‘부탁드립니다’의 두 곳에서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존대의 표현이며 (7나)는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고 명사만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다 보니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7다)는 ‘예정가격보다 적은 가격 중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의미전달이 불분명하다. (7라)는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등이 두 번 반복되고 주어가 ‘예정가격은’인지 ‘예정가격이’인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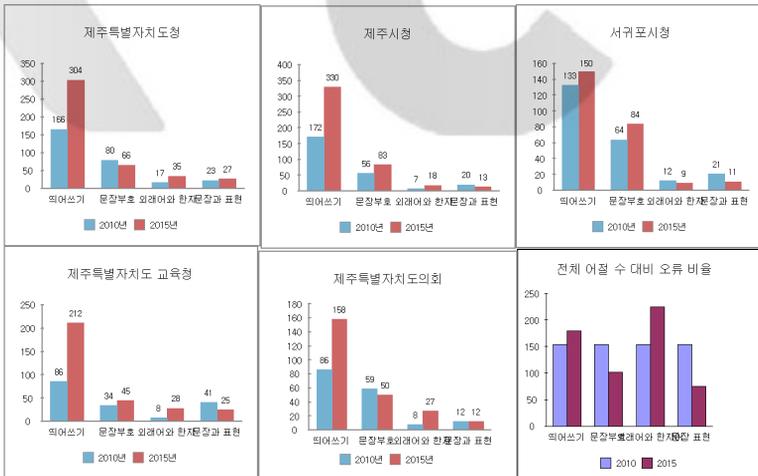
5) 2010년과 2015년의 비교

중앙 차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 꾸려지고 지역자치단체에 국어진흥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국어 발전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공공언어는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국어와 관련된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고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대국민 문서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의 사용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체 어절 수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와 한자어	문장과 표현	계
2010년	6,423	643	321	52	117	7,439
2015년	9,863	1,154	328	117	88	11,462
증가율	154%	179%	102%	225%	75%	154%

[표 11] 전체 어절 수에 따른 오류 현황과 비율

2010년에 조사된 자료와 2015년에 조사된 자료의 양적 차이에 따라 오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어절 수의 증가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 보았다. 2015년 문서의 전체 어절 수가 2010년의 문서에 비해 54% 더 많다. 따라서 2010년 문서가 2015년 문서와 같은 양일 경우 똑같은 오류가 반복된다고 전제하면 띄어쓰기는 990개, 문장부호는 494개, 외래어와 한자어는 80개, 문장과 표현은 179개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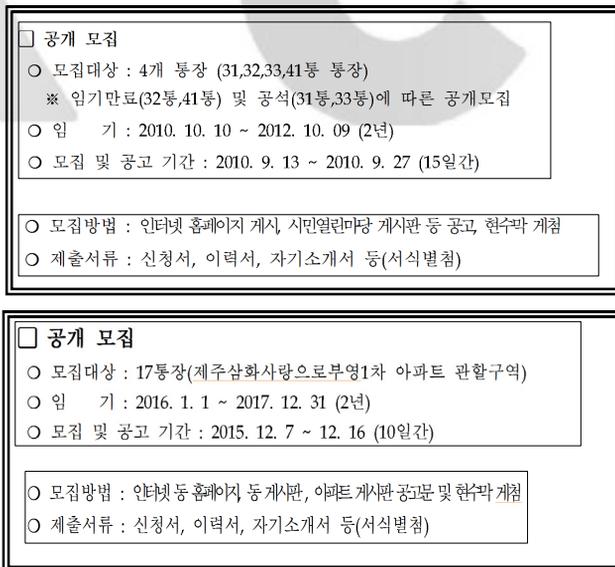


[그림1] 2010년과 2015년의 제주지역 공공언어 오류 현황

실제 비율을 살펴보면 띄어쓰기는 2010년에 비해 2015년 더 많은 오

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어절 수에 따른 오류 비율도 25%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은 크게 늘어 전체 어절 수 대비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문장부호 오류는 전체 어절 수와 대비하여 52% 줄었으며 문장과 표현의 오류도 전체 어절 수 대비 79%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오류의 증가율을 보면 전체 어절 수가 증가한 만큼 오류 수도 증가하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5년의 각 자치단체별 오류 현황을 그래프로 보면 [그림1]과 같다.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공공언어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각 공문서가 갖는 특징이나 문서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많은 공공언어 개선의 노력을 생각해 보면 허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의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기존에 시행했던 문서를 일부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관계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 2010년, 2015년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위의 2010년과 2015년의 공고문은 같은 목적으로 누리집에 게시된 문서이다. 몇 개의 사항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띄어쓰기의 경우 ‘모집대상, 모집방법, 제출서류, 서식별첨’ 등을 한 단어로 인식하여 붙여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모집 대상, 모집 방법, 제출 서류, 서식 별첨’처럼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문장부호의 경우 쌍점(:)을 앞말과 띄어서 사용하고 있다. ‘모집대상 :, 임기 :, 모집 및 공고 기간 :, 모집방법 :, 제출서류 :’처럼 쓰고 있는데 모두 앞말과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월일 다음에 온점을 찍어 표시해야 하는데 마지막 날짜 다음에는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두 개의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10. 9. 13 ~ 2010. 9. 27’, ‘2015. 12. 7 ~ 12. 16’처럼 사용한 것은 ‘2010. 9. 13. ~ 2010. 9. 27.’, ‘2015. 12. 7. ~ 12. 16.’처럼 날짜 다음에 온점을 찍어야 한다. 또, 어려운 한자어인 ‘계첩’을 6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많은 업무량과 부족한 시간, 반복되는 업무는 같은 오류를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어 관련 단체에서는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고 공공언어 개선을 홍보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었다. 실제 공공언어의 현장에서 그런 노력은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바른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받고, 일자리로 돌아와서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각자의 세계에서 자신들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시기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공공언어 개선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실제

제주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언어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개선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주 지역의 공공언어 실태를 2010년 자료와 2015년 자료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자료를 통해 공공언어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언어 사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누리집에 게시되었던 문서와 2015년에 게시된 문서의 오류를 조사한 결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문서의 성격과 길이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였다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어 관련 기관의 공공언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공언어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언어란 결국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때 중요한 것은 공공언어의 대상(사용자)이 일반인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인은 문해 수준이 높지 않을뿐더러 더욱이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 등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언어의 개선의 핵심은 바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라고 할 수 있다. 공공언어 개선은 바로 우리 글을 만든 세종의 ‘애민 정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언어 개선은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국가, 기관, 행정 직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기관 책임자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공공언어 개선이 논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기대하려면 기관 책임자들이 왜 공공언어를 쉽고 쓰는 것이 필요한지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행정 실무자들의 교육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언어 생산자인 실무자들이 쉽고 바른 공공언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요청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제주지역 공공기관 공공언어 분석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도	게시물	제목	게시일	어절 수	전체 어절 수
2010년	게시물1	제31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요강 공고	2010. 8. 2.	245	1,278
	게시물2	2010년도 향토자원 조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10. 8. 4.	229	
	게시물3	소상공인 성공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계획 공고	2010. 8. 9.	159	
	게시물4	생활 공감 정책 도민 아이디어 공모 계획 공고	2010. 8. 16.	318	
	게시물5	2010년 생산 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 지원 계획 공고	2010. 8. 23.	179	
	게시물6	시내·외 버스 탑승 교통량 조사원 모집 안내	2010. 8. 26.	148	
2015년	게시물1	제36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요강 공고	2015. 6. 8.	318	2,226
	게시물2	세계 자연 유산 지구 핵심 지역 내 사유지 매입 보상 계획 열람 공고	2015. 3. 17.	268	
	게시물3	2015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공고	2015. 3. 12.	407	
	게시물4	2015년 하반기 도정 발전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 공고	2015. 10. 21.	599	
	게시물5	2015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고	2015. 2. 11.	370	
	게시물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2015. 1. 7.	264	

2. 제주시청

연도	게시물	제목	게시일	어절 수	전체 어절 수
2010년	게시물1	녹색 성장 시민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2010. 7. 19.	345	1,635
	게시물2	장애인 복지 일자리 모집 공고	2010. 8. 9.	193	
	게시물3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2010. 8. 13.	497	
	게시물4	2010년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2010. 8. 24.	127	
	게시물5	통장 공개 모집 공고	2010. 9. 13.	338	
	게시물6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계획	2010. 9. 27.	135	
2015년	게시물1	2015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15. 7. 20.	789	2,447
	게시물2	2015년 제주시 행복한 결혼식 대상자 모집	2015. 4. 16.	126	
	게시물3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15. 1.	653	
	게시물4	주말 직거래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참가자 모집 안내	2015. 9. 7.	149	
	게시물5	2015년도 전문 구조 요원 모집 공고	2015. 6. 12.	339	
	게시물6	통장 공개 모집 공고	2015. 12.	391	

3. 서귀포시청

연도	게시물	제목	게시일	어절 수	전체 어절 수
2010년	게시물1	기후 변화 대응 수강생 모집	2010. 8. 3.	281	1,260
	게시물2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도급 조사원 모집 공고	2010. 8. 9.	224	
	게시물3	제4단계 공공 근로 사업 모집 공고	2010. 8. 31.	243	
	게시물4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요령 공고	2010. 9. 6.	183	
	게시물5	2010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10. 9. 9.	153	
	게시물6	바다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 모집	2010. 9. 27.	176	
2015년	게시물1	201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공고	2015. 9. 2.	170	1,624
	게시물2	2015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2015. 5. 15.	267	
	게시물3	2015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에 함께할 신랑 신부를 모집합니다.	2015. 5.	245	
	게시물4	변화의 시작, 에코그린 제주! 기후 변화 적응 교육과정	2015. 7.	326	
	게시물5	생활 법률 과정 교육생 모집	2015. 8.	263	
	게시물6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015. 11.	353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연도	게시물	제목	게시일	어절 수	전체 어절 수
2010년	게시물1	희망 운동화 보내기 안내문	2010. 7. 15.	168	1,161
	게시물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턴 최종 합격자 및 예비 채용 후보자 순위 공고	2010. 7. 28.	158	
	게시물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Wee 센터 사회복지사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 계획 공고	2010. 8. 9.	156	
	게시물4	2010년 학업 중단 학생 교육 지원 사례 공모 계획	2010. 8. 12.	237	
	게시물5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 공개 모집 공고	2010. 8. 16.	201	
	게시물6	초등 돌봄 교실 강사 채용 공고	2010. 8. 26.	241	
2015년	게시물1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정 도서 심사위원 신청 안내	2015. 12. 8.	391	1,678
	게시물2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 소명 대상자 공지	2015. 11. 11.	118	
	게시물3	201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필기시험 안내문	2015. 6. 23.	193	
	게시물4	2015 학교 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재공모 계획 공고	2015. 10. 8.	484	
	게시물5	2015년 행복 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모집 안내문	2015. 3. 30.	209	
	게시물6	주민 참여 예산 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2015. 5. 11.	283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도	게시물	제목	게시일	어절 수	전체 어절 수
2010년	게시물1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모의 의회 운영 계획	2010. 8. 17.	253	1,089
	게시물2	법·제도 개선 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010. 8. 18.	135	
	게시물3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 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0. 8. 26.	246	
	게시물4	제주 미래 전략 산업 연구회 창립 기념 초청 강연 개최	2010. 8. 30.	147	
	게시물5	제주 지속 가능 발전포럼 창립식 및 특별 강연	2010. 8. 31.	117	
	게시물6	자치 입법 제안 센터 개설 안내	2010. 9. 3.	191	
2015년	게시물1	2015년도 제주 의정 소식 발간 입찰 공고	2015. 1. 5.	553	1,888
	게시물2	2015년도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15. 1. 12.	552	
	게시물3	대학생 자치 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공고	2015. 12. 3.	84	
	게시물4	의회 바로 알기 청소년 UCC 공모	2015. 9. 17.	358	
	게시물5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의견 수렴	2015. 9. 25.	257	
	게시물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사항 알림	2015. 8. 5.	84	

■ 참고 문헌

- 김명희, 「한국의 공공언어정책 연구-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91-110쪽.
- 김세중,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계획」,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2010, 83-88쪽.
- 김정수, 「공공기관의 언어」,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2009, 1-8쪽.
- 김하수, 「공공언어의 개념과 기능」,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2009, 별첨 자료.
- 남영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체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2009, 65-81쪽.
- 민현식 외,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2010.
- 박창원, 「공공언어의 공공성-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5, 이화어문학회, 2015, 139-178쪽.
- 서은아·김형주·김미형,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연구」, 『한민족어문학』 67, 한민족어문학회, 2014, 165-185쪽.
- 이인제, 「공공언어로서의 교육 언어의 사용 실상과 개선 정책」,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 2009, 27-65쪽.
- 이희수·박현정·이세정,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와 OECD 국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3-2, 한국비교교육학회, 2003, 193-219쪽.
- 장충덕, 「충청북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언어 실태」, 『언어학연구』 22, 한국중언어학회, 2012, 221-248쪽.
- 전영옥 외, 「공공언어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사회언어학』 21, 사회언어학회, 2013, 241-270쪽.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0 제주도내 행정기관의 누리집 언어』, 2010.
- 조태린(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회, 2010, 379-405쪽.
- 황용주,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2011, 23-45쪽.

■ Abstract

A Research on the Use of Public Language in Jeju Region

Kim, Mi-jin, Bae, Young-hwa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on examining the necessity of public language improvement and the patterns of public language use in Jeju public institutions.

The key point of public language is the fact that public language users are general public and unspecified individuals regardless of who the language producers are. Therefore, public language should be written in a way that general public can have easy access to it. After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Law* was established in 2005, language officials were appointed in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local agencies to encourage proper and easy public language use, and Public Language Supporter Center was established in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Besides, all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competed to enact *The Ordinance on Promotion of the Korean Language*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number of errors in documents posted in the homepage in 2010 and 2015, looks very similar results. This shows that, despite the several efforts to improve the use of public language, the practical use of public language has not been changed drastically.

To improve the use of public language, the government, government institutions, administrative staff, and all citizens need to show interest on the matter. Not only the government has to make related policy, but also all officials of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to improve their consciousness about the use of public language. To expect practical changes on the use of public language, it is crucial to support administrative workers to understand why it is necessary to use

public language in easier way and practice in real life. Moreover, it is feasible only with the cooperation and interest from all citizens.

Key words : public language, public language improvement, plain language policy, Jeju-do, grammatical errors

투고완료일 : 2016. 5. 15. 심사완료일 : 2016. 6. 15. 게재확정일 : 2016. 6. 20.

